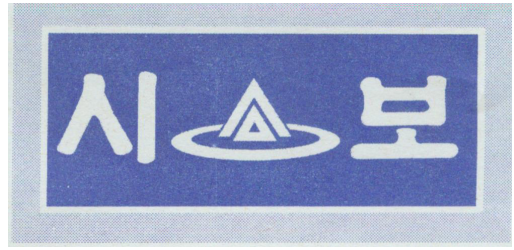


#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465호 2012. 7. 20.(금)

## 【조 례】

- 제827호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제828호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4
- 제829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회 람							
--------	--	--	--	--	--	--	--

공주시의회 제1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2. 7.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2년 7월 20일

공주시 조례 제 827 호

###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이버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시 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  
기 위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사이버공주시민을 단골고객화 하기 위하여 시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촉용으로 제공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제도의 운영)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사이버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10.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lt;신설&gt;</p> <p>제6조(혜택) ① 시장은 사이버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p> <p>1. ~ 11. (생략)</p> <p>12.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lt;신설&gt;</p> <p>② (생략)</p>	<p>제5조(제도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사이버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시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u></p> <p>11.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6조(혜택) ① -----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사이버공주시민을 단골고객화하기 위하여 시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촉용으로 제공</u></p> <p>13.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현행과 같음)</p>

공주시의회 제1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2. 7. 9.)에서 의결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2년 7월 20일

공주시 조례 제 828 호

###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커피·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이하 “종량제”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⑤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①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배출지역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 또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종량제 실시지역에서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배출시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종량제 실시 외 지역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③ 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 외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3와 같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 제작 시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 등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을 쉽게 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전용수거용기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납부필증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 공급금액은 대행수수료와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공급을 대행하는 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공급한다.

③ 납부필증 공급 대행수수료는 납부필증 공급금액의 100분의 6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이윤은 대행수수료의 100분의 9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

④ 납부필증의 공급대행, 판매소 지정 등은 「공주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럿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때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

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6조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6조제1호에 따라 위탁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의 경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 및 자료·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제21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의 이재민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에 관한 사항)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다량배출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제5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방법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9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쓰레기</li> <li>○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li> <li>○ 소금성분이 많은 장류·젓갈류 및 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li> <li>○ 비닐, 병뚜껑, 조개껍데기, 복어, 내장, 티백, 옥수수대 등 딱딱하거나 유해 또는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li> </ul>

[별표 2]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용 량	금 액	비 고
전용수거용기	단독주택, 연립, 소형음식점, 공동주택 등	5ℓ	170원/회	배출량에 따라 용기 선택가능
		25ℓ	850원/회	
		120ℓ	4,070원/회	

※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별표 3]

##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 (제11조제1항 관련)

구분	색상	종류	규격	비고
납부필증	녹색	5ℓ	150mm × 25mm	○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 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 방지 표시 ○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용 구조로 제작
	청색	25ℓ		
	자주색	120ℓ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색상 및 규격을 변경 제작할 수 있다.

[별표 4]

##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재질 등 (제11조제3항 관련)

구분	규격 (내부용량)	구조	재질
전용수거용기	5ℓ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플라스틱 (PE, HDPE)  허용오차 ±5%
	25ℓ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120ℓ	용기하부에 바퀴가 있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며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특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 고정 부착
- 용기외부에 내부용기 용량(5, 25, 120ℓ)표기 단위로 인쇄 또는 표시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kg의 내용물을 투입 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파손이 없어야 한다.
- 용기 전면과 뚜껑상부에 전용수거용기 이용안내문이나 배출요령 등을 인쇄

[별표 5]

##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제12조제3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판매단위	공급금액	대행수수료 (6%)	납부필증 판매소 이윤 (9%)	판매가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5ℓ	1매	147	9	14	170
	25ℓ	1매	736	44	70	850
	120ℓ	1매	3,522	211	337	4,070

[별표 6]

##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기준 (제18조 관련)

구 분	사 업 장 별	점검횟수
우수관리	○ 폐기물처리업체 등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업장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	2년 1회 이상
일반관리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체계가 불명확한 원형 이용사업장 ○ 스스로 감량, 축산농가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	1년 1회 이상
중점관리	○ 2년 이내에 1회 이상 위반사업장 및 민원유발 사업장	반기별 1회 이상

[별표 7]

## 과태료 부과기준 (제20조제3항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②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2.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신고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40	50	60
	라. 신고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0	100	200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 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 점포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 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 재활용처리실적 관리대장 (제17조제4호 관련)

사업장명:

(단위: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활용			
		자가 처리방법	자가 처리량	처리량 누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재활용자	누계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주시의회 제1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2. 7.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2년 7월 20일

공주시 조례 제 829 호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  
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선”을 “보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을 ““특수 가압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흡수정 등의 설비”라 함은”을 ““흡수정 등의 설비”란”으로, “일체  
의”를 “모든”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당해건물”을 “해당 건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선공사”를  
“보수공사”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공지”를 “공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에”로,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사에 있어서는”을 “공사의 경우에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통보일”을 “통지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보”을 “통지”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입회하”를 “참석하”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선”을 “보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옥내급수설비”를 “건물 안 급수설비”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실비를 가산한다”를 “실제 비용을 더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하고자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수납대행기관에 지정기일 내에”를 “수납대행기관이나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사에 있어서는”을 “공사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추징한다”를 “추가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전용급수설비, 보조급수설비,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 확대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흡수정 이하의 급수설비의 설치공사를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상하수도설비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를 “그 밖에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보수, 철거 및 파손”으로, “시행에”를 “시행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비용”을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하여는 당해”를 “대해서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재불명일”을 “있는 곳이 불명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경우에 있어서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를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후”를 “앞뒤”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잔여량”을 “남은량”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정정하고”를 “바로잡고”로, “추징”을 “추가 징수”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연체금이 가산된”을 “연체금을 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당월분고지서”를 “그달분고지서”로, “발부한다”를 “발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을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통보받은”을 “통지받은”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제33조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5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3항제1호 중 “내식성”을 “내부식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탁도”를 “혼탁도”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할”로, “통보”를 “통지”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을 “대해서도 예산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4조 제목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을 “수도계량기의 훼손 및 망실 등에 대한 책임”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가 수리비 및 계량기 등 기물구입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비 및 계량기 등 기물구입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리비 및 기물구입비 등의 산출방법은 제13조에 따른다.

제45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추징”을 “추가 징수”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되면”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를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로 한다.

제49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0조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3호를 삭제한다.

제5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및 별표 5 수도요금 감면기준 중 제1호·제2호·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은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기간 만료일에 종료한다.

[별표 5]

## 수도요금 감면기준 (제39조 관련)

구	분	감면율(액)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매월 2,000원까지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3등급 장애인인 있는 세대		매월 2,000원까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3,000원까지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별표 1 일반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m <sup>3</sup> 이상~100m <sup>3</sup> 이하 적용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별표 1 가정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m <sup>3</sup> 이상~20m <sup>3</sup> 이하 적용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월부터 해제 월까지 50퍼센트
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재이용 사용량의 30퍼센트까지를 수도사용량에서 감면
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매월 3,500원까지
9.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이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누수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퍼센트
10.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상호호별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사용자		세대마다 매월 300원
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목욕장		별표 1 일반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m <sup>3</sup> 이상~100m <sup>3</sup> 이하 적용
12.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매월 3,000원까지
1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범위 내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 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공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u>기타</u>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u>수선</u>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li> <li>3. “<u>특수 가압시설</u>”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li> <li>4. (생략)</li> <li>5. “<u>흡수정 등의 설비</u>”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u>일체의</u> 급수시설을 말한다.</li> </ol>	<p>제1조(목적) ----- ----- ----- ----- ----- <u>그 밖에</u> ----- ----- -----.</p> <p>제2조(정의) ----- ----- <u>뜻은 다음과</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 <u>보수</u> ----- -----.</li> <li>3. “<u>특수 가압시설</u>”이란 ----- ----- -----.</li> <li>4. (현행과 같음)</li> <li>5. “<u>흡수정 등의 설비</u>”란 ----- ----- ----- ----- <u>모든</u> -----.</li> </ol>

현행	개정안
<p>6. ~ 10. (생략)</p> <p>11. “세대”란 <u>당해건물</u>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p> <p>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u>새로이</u>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p> <p>2. (생략)</p> <p>3. <u>수선공사</u>: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p> <p>4. (생략)</p>	<p>6. ~ 10. (현행과 같음)</p> <p>11. ----- <u>해당 건물</u> ----- ----- -----.</p> <p>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 -----.</p> <p>1. ----- <u>새로</u> -----</p> <p>2. (현행과 같음)</p> <p>3. <u>보수공사</u>: ----- ----- -----</p> <p>4. (현행과 같음)</p>
<p>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생략)</p> <p>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u>의하여</u>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u>따라</u> ----- -----.</p>
<p>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생략)</p>	<p>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u>공지</u>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검침이 가능하도록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p>	<p>② ----- ----- ----- <u>공지</u> ----- ----- -----</p>
<p>③ ~ ④ (생략)</p> <p>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 ----- <u>인정하면</u> ----- ----- -----</p>
<p>② 제1항의 <u>경우에 있어서</u>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② ----- <u>경우에</u> ----- ----- <u>인정하면</u> ----- ----- -----</p>
<p>제9조(공사의 시행) ① 제5조에 의한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u>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u>(이하 “<u>대행업자</u>”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p>	<p>제9조(공사의 시행) ① ----- <u>따른</u> ----- ----- ----- ----- 「<u>건설산업기본법</u>」 ----- ----- <u>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u> ----- ----- -----</p>
<p>② 급수공사에 <u>소요되는</u> 자재는</p>	<p>② ----- <u>필요한</u> -----</p>



현행	개정안
<p>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 업에 등록된 자로서 미리 시장으 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p> <p>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 000원, 갱신 2,000원의 교부수수료 를 징수한다.</p> <p>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등 필 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 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 로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 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 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 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의 교체,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 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p> <p>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 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 로 한다.</p>	<p>&lt;삭 제&gt;</p> <p>제11조(준공검사) ----- ----- ----- <u>참석</u> <u>하</u> -----.</p> <p>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 리) ① ----- ----- ----- <u>해당</u> ----- ----- ----- <u>보수</u> ----- ----- -----.</p> <p>② ----- ----- ----- <u>따라</u> ----- -----.</p>



현행	개정안
<p>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u>아니한</u>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p> <p>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u>추징</u>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 (생략)</p> <p>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u>대하여</u>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 공사의 경우에는 -----.</p> <p>② ----- 아니한 경우 -----.</p> <p>③ ----- <u>추</u>가 징수한다.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u>대해서는</u> ----- 범위 -----.</p>
<p>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u>전용급수 설비, 보조급수설비,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u></p>	<p>제15조(원인자부담금) <u>전용급수설비, 보조급수설비,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 확대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현행	개정안
<p>② <u>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p>제17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① (생략)</p> <p>② <u>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u></p> <p>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u>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u></p> <p>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u>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u></p>	<p>제17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흡수정 이하의 급수설비의 설치공사를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상하수도설비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u></p> <p>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 그 밖에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보수, 철거 및 파손 ----- 시행이 ----- 해당 -----.</p> <p>② ----- 필요한 비용 -----.</p> <p>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대해서는 해당 -----.</p>

현행	개정안
<p>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p> <p>③ (생략)</p> <p>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u>기타</u>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 <u>대</u> <u>해서는</u>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그 밖에</u> ----- -----.</p>
<p>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u>당해</u>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u>의하여</u>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u>인정할 때에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0조(수도의 사용) ① ----- ----- <u>해</u> <u>당</u> ----- ----- -----. ----- <u>따라</u> ----- ----- <u>인정하면</u> ----- -----.</p>
<p>② (생략)</p> <p>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신고)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p> <p>3. ~ 5. (생략)</p> <p>② 기타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생략)</p> <p>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u>공작물 설치</u>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생략)</p> <p>제23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u>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附隨)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u></p>	<p>2. ----- <u>그 밖에</u> -----</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u>그 밖에</u> -----</p> <p>-----</p> <p>-----</p> <p>-----</p> <p>-----</p> <p>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 <u>인공구조물</u> -----</p> <p><u>해서</u>는 -----.</p> <p>③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생략)</p> <p>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p> <p>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u>소재불명일</u> 때</p>	<p>&lt;삭 제&gt;</p> <p>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 ----- <u>그 밖에</u> ----- ----- <u>인정하면</u> ----- ----- -----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따라</u> ----- ----- ----- <u>대해서는</u> ----- ----- ----- -----</p> <p>③ ----- ----- ----- -----</p> <p>1. ----- <u>있</u> ----- <u>는 곳이 불명일</u> -----</p>

현행	개정안
<p>2. (생략)</p> <p>3. <u>기타</u> 시장이 정하는 경우</p> <p>④ (생략)</p> <p>제26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p> <p>④ (생략)</p> <p>⑤ 수도사용요금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u>여신전문금융업법</u>」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p> <p>⑥ (생략)</p> <p>제27조(수도사용요금) ① (생략)</p> <p>② 제3조 <u>단서</u>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u>대하여는</u>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p> <p>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생략)</p> <p>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p>	<p>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6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p> <p>-----</p> <p>----- 「<u>여신전문금융업법</u>」</p> <p>제3조제1항 -----</p> <p>-----</p> <p>-----</p> <p>⑥ (현행과 같음)</p> <p>제27조(수도사용요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단서</u> -----</p> <p>-----</p> <p>-----</p> <p>③ -----</p> <p>----- <u>대해서는</u> -----</p> <p>-----</p> <p>-----</p> <p>제28조(업종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현행	개정안
<p>는 <u>경우에 있어서는</u>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u>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u> <u>경우에</u>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 <u>경우에는</u> ----- ----- ----- -- <u>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u> ----- -----.</p>
<p>제29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u>전후</u>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p>	<p>제29조(요금의 조정) ① ----- ----- <u>따라</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앞뒤</u> ----- -----.</p>
<p>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u>의하여</u>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p>	<p>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 <u>따라</u>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현행	개정안
<p>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도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u>의하여</u> 산정한다.</p> <p>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u>의하여</u> 산정한다.</p> <p>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u>잔여량</u>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p>	<p>② ----- ----- ----- ----- -- <u>따라</u> -----.</p> <p>③ ----- ----- ----- ----- -- <u>따라</u> -----.</p> <p>④ ----- ----- ----- ----- ----- ----- --- <u>남은량</u> ----- -----.</p>
<p>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u>정정</u>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u>추징</u>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p>	<p>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바로</u> <u>잡고</u> ----- ----- <u>추가 징수</u> ----- -----.</p>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략)</p> <p>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u>연체금이 가산된</u>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p> <p>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u>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u>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제33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u>대하여는</u>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 한다.</p> <p>② (생략)</p> <p>제34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u>아니한</u>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u>범위</u> 내에서 다음 요율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p> <p>제35조(납부고지) ① ~ ②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연체금을 더한</u> ----- -----.</p> <p>③ ----- -- <u>그 밖에</u> ---- <u>필요하다고 인정하면</u> ----- -----.</p> <p>제33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 ----- <u>대해서는</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4조(연체금 및 독촉) ----- ----- ----- <u>아니한 경우</u>----- ----- ----- <u>범위</u> ----- ----- -----</p> <p>제35조(납부고지) ① ~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미납액누계를 <u>당월분고지서</u>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u>발부한다</u>.</p>	<p>③ ----- <u>그달분 고지서</u> ----- ----- ----- <u>발급한다</u>.</p>
<p>④ <u>제2항의 규정</u>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u>제2항에 따라</u> ----- ----- -----.</p>
<p>제36조(임시급수) ① 행사 및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u>대하여</u>는 <u>급수구역에 한하여</u>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p>	<p>제36조(임시급수) ① ----- ----- ----- <u>대해서</u>는 <u>급수구역에 한정</u> ----- -----.</p>
<p>② 제1항의 사용자에 대하여 제15조에 <u>의한</u>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급수 완료 후 해당 급수설비 철거공사에 <u>소요되는</u>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p>	<p>② ----- ----- <u>따른</u> ----- ----- <u>필요한</u> -----.</p>
<p>제37조(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의 설계, 시공자재검사, 준공검사 및 단수처분해제 수수료를 별표 4에 <u>의하여</u> 징수한다.</p>	<p>제37조(수수료) ----- ----- ----- <u>따라</u> -----.</p>
<p>제38조(수질검사) ① (생략) ②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전</p>	<p>제38조(수질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p>

현행	개정안
<p>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u>통보받은 날</u>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u>교부하여야</u> 한다.</p>	<p>----- ----- <u>통지받은</u> ----- ----- ----- <u>발급하여야</u> -----.</p>
<p>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u></li> <li>2. <u>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u></li> <li>3. 「<u>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u>」의 <u>규정에 의한 재난지역</u></li> <li>4.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의한 <u>국민기초생활수급자</u></li> <li>5. 「<u>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3조의 <u>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u></li> <li>6. <u>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li> </ol>	<p>제39조(수도요금 감면) ① 시장은 제33조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5와 같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0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li> <li>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li> <li>3. 20호이상의 공동주택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대행을 하는 수도 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p>	<p>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lt;삭 제&gt;</p> <p>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현행	개정안
<p>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아연도강관 등 비 <u>내식성</u>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p> <p>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④ (생략)</p> <p>제42조(단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p> <p>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u>기타</u>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p> <p>2. ~ 6. (생략)</p>	<p>----- ----- -----.</p> <p>1. ----- <u>내부식성</u> ----- ----- -----</p> <p>2. ----- ----- ----- <u>혼탁도</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2조(단수처분) ① ----- ----- ----- ----- ----- ----- -----</p> <p>1. ----- ----- ----- <u>그 밖에</u> ----- -----</p> <p>2. ~ 6.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p> <p>② (생략)</p> <p>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단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u>통보</u>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43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u>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u>당해</u>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u>의하여</u>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p> <p>③ (생략)</p> <p>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u>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u></p>	<p>7. <u>그 밖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할</u> ----- ----- <u>통지</u> ----- -----.</p> <p>제43조(포상금 지급) ① ----- ----- ----- ----- ----- ----- <u>대해서도 예산 범위</u>----- -----.</p> <p>② ----- <u>해당</u> ----- ----- <u>따라</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및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u>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가 수리비</u></p>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제48조(이의신청) ① <u>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u>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p> <p>② (생략)</p> <p>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u>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u>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u>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u>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p> <p>제51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p> <p>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수도 업무담당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1. ~ 22.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8조(이의신청) ① ----- <u>그 밖에</u>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 ----- <u>그 밖에 모든 징수금 징수의 경우</u> ----- ----- -----.</p> <p>제50조(소멸시효) ----- ----- ----- ----- ----- ----- ----- <u>대해서는</u> ----- -----.</p> <p>제51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2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23. <u>요금 등의 감면</u></p> <p>24. ~ 31. (생략)</p> <p>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u>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lt;삭제&gt;</p> <p>24. ~ 31. (현행과 같음)</p> <p>제52조(시행규칙) ----- <u>시행에</u>  -----  -----.</p>